

이호재

8-2

평양국제토론회 토론회문

조선인 로무동원의 법적강제성

1993, 11, 7~8

메이지대학 교수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성원

운노 후쿠즈

조선인로무동원의 법적강제성

1. 로무동원계획의 모순

조선인강제련행은 일본 정부의 로무(국민)동원계획에 기초하여 감행된 것이다.

그 법적근거로 되는 기본법은 조선인이 대표권을 가지 못한 일본의 제73제국의회에서 제정되어 1938년 4월 1일 법률 제55호로서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내외지》들에서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이다.

그후 정부는 총동원법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하여 련속 칙령, 제령, 통달 등을 공포하고 로무동원계획을 실행하였다. 1939년 7월 이후의 이른바, 《모집》, 1942년 2월 이후의 이른바 《관알선》, 1944년 8월이후의 《국민징용령》의 조선인에 대한 발동 등은 모두 그 법령들에 기초하여 감행되었다.

《모집》-《관알선》-《징용》이라는 동원형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변화는 일반적으로 동원강제력의 강화를 위한것으로 이해되어있지만 이해가 잘못된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나는 《모집》-《관알선》에로의 변화는 전조선을 포함한 국가적규모의 노동력재분배계획에 기초한 정책적권한이며 《관알선》-《징용》에로의 변화는 기지전설, 군공장들에 대한 군요원(대다수는 군속신분)으로서의 징발이 주되는 동기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동원정책의 배경에는 조선에서의 군사공업화의 촉진에 따르는 노동력재분배계획이 있다. 그것은 농촌의 전시적재편성을 추진시키면서 과잉노동력을 공업노동력으로 돌리는 동시에 일본으로 보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농촌노동력징발은 농업의 황폐화를 가져왔을뿐이지 노동력류출, 재분배계획은 붕괴되지 않을수 없었다. 노동력정책으로서도 실패한것이다.

강제련행정책을 변경시키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피련행조선인로무자들의 대량적인 도망에 의한 로무동원계획의 파탄, 그로 인한 신규노동력의 추가적보충을 강제력을 배가하여 진행하여야 하였다는데 있다. 1939년도부터 1942년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인로무자들의 《이입》과 《감모》를 밝힌 제1표에 의하면 이 4년간의 《이입》자 243,136명에 대하여 《감모》자는 136,580명(56.2%)이고 그중 《도망》자는 《감모》자의 62.9%

에 해당하는 85,966명이다.

제 2 표는 자주 인용되는 《조선경제통계요람》

(1949년판)에 의한 강제련행로무자수인데 이에 의하면 1939-1944년도에 일본으로 《수출》된 조선인로무자 수는 798,143명에 달하는데 1944년도말에 해당하는 1945년 3월 현재의 수는 그 41.3%에 지나지 않는 329,890명이다.

그 차이 약 47만명중에는 조선에 돌아갔거나 사망한 사람 등이 포함되는데 대다수는 《도망》가서 통계밖의 인원으로서 일본에 있으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있었을것이다. 《조선경제통계요람》은 출처로서 일본후생성자료에 기초했다고 쓰고있다. 모름지기 《1945년 3월 현재수》는 후생성이 조선인로무자들의 고용을 허가하고있던 사업소의 취업자들과라고 생각된다.

이때까지 조선인강제련행로동자들의 《도망》에 대하여서는 그리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본정부의 로무동원계획을 형클어뜨린 조선인들의 저항의 한 형태로서도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인강제련행문제는 주로 일본에로의 련행과 일본에서의 강제로동에 대하여 고찰되어왔는데 앞에서 말한

로무동원 정책에 미루어보더라도 조선내동원에 대하여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좀 대략한 추산이지만 여러 자료들에 의거하여 제 3 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아세아의 일본군점령지인 싸하린, 《만주》에로의 련행, 근로보국대, 근로정신대, 학도동원 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축소된 수치이다.

1940년 조선《국세조사》에 의한 조선인인구는 2,354만명, 그중 16-40살 남자(1941년 10월에 공포된 청장년국민등록요신고자들의 연령)는 421만명이다. 16-40살의 청장년남자인구에 대하여 앞에서 든 조선밖으로의 련행자수는 25-28%에 해당된다. 4명중 한명이 로무자나 병사로서 끌려간것으로 되는데 조선내동원을 포함시키면 《마을에 젊은 남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며 송두리채 동원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2. 조선에서의 강제련행의 강제성

조선인강제련행이라는 술어를 처음 사용한것은 박경식선생이다. 1960년경부터 중국인부터, 로무자들에 대한 강제련행이 문제로 되고있었는데 그는 1965년에 《조선인

강제련행에 대한 기록》이라는 훌륭한 책을 출판하였다.

그 연구는 《중국인 강제련행의 조사연구에서 자극을 받고》하였다고 그가 작년 말에 출판된 《재일조선인, 강제련행, 민족문제》라는 책의 맺는말에서 말하였다. 따라서 중국인 강제련행을 모방하여 조선인 강제련행이라고 불렀다고 말할수 있다.

그는 강제련행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연구상황으로 판단하면

(1) 자유의사에 기초한 노동력이 동, 외국이주는 아니라는것

(2) 일본인의 전시동원과 달리 피지배민족인 조선인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하여 동원되었다는것

(3) 일본 《내지》와 그 밖의 땅으로 련행되었기때문에 생긴 가족리산, 생사불명, 유골방치 등의 인권무시가 공공연히 감행되었다는것

등을 가지고 강제련행이라고 부른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들은 자주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전시에는 우리 일본인들도 고된 로동을 하여야 하였으며 고생하였다》 사실 직업의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로동을 강요당한 일

본인들은 많다. 그런 의미에서는 (1)에 해당되는 점이 있지만 (2)나 (3)에는 맞지 않는다.

이 점이 얼핏 보기에는 같은 전쟁 체험을 했다고 하여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로무동원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고 강제련행된 조선인 일반 즉 로무자들 외에 군인, 군속과 《종군위안부》 등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결함은 이 규정으로는 중국인 강제련행과 조선인 강제련행의 공통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점령지와 식민지의 구별을 놓쳐버릴 우려가 있다. 점령지에서의 군명령에 의한 노동력조달을 위한 강제로동과 식민지에서의 로무동원은 서로 다르다. 나는 조선식민지의 로무동원은 법령에 기초한 강제련행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인 강제련행에서 《강제》라는 의미는 물리적 강제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 즉 법률과 칙령을 비롯한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국가책임 밑에서 감행된 강제라고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일본정부는 당시에는 유효한 법령에 기초하여 감

행한것인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할 논리를 준비할것이 예상된다.

우리는 이에 대항하여 타파하는 논리를 준비하여야 한다.

I 표

조선인로무자의 《이입》과 《감모》

		1939년도	1940년도	1941년도	1942년도
이입 계획수 (명)		85,000	88,000	81,000	120,000
조선총독부 승인수 (A)		58,134	71,695	77,071	121,320
이입 실수 (B)		38,700	54,944	53,482	96,010
$\frac{B}{A} \times 100 (\%)$		66.6	76.6	69.4	79.1
감모수합계 (C)		3,639	31,177	46,277	55,487
$\frac{C}{B} \times 100 (\%)$		9.2	56.7	86.5	57.8
소 모 항 목	도 망	2,600	20,430	27,674	35,262
	귀 향	711	8,336	14,816	15,729
	사 망	81	406	664	615
	기 타	247	2,005	3,123	3,881

후생성전민국 《제84차 제국의회참고자료》에서 작성

2 표

일본에 《수출》된 조선인로무자

	1939 년도	1940 년도	1941 년도	1942 년도	1943 년도	1944 년도	계	1945년 3월현재수
탄 광	24, 279명	35, 441명	32, 415명	78, 660명	77, 850명	108, 350명	356, 995명	136, 810명
광 산	5,042	8,069	8,942	9,240	17,075	30,900	79,268	34,060
토목건설	9,479	9,898	9,563	18,130	35,350	64,827	147,247	29,642
항만하역 및 운 수						23,820	23,820	15,333
공장기타		1,546	2,672	15,290	19,455	151,850	190, 813	114, 044
계	38, 800	54, 954	53, 592	121, 320	149, 730	379, 747	798, 143	329, 890
로무 (국 민) 동원계획수	85, 000	97, 300	100, 000	130, 000	155, 000	326, 000		

《조선경제통계포함》(1949년판)에서 작성, 로무
(국 민) 동원계획수는 대장성관리국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력사적조사》 통권 제10책 조선편 제9분책에 의
한다.

3 표

조선밖 (계 104~116만명)

로무동원; 로무자(일본으로) 80만명

군요원(군속) 11~15만명

병력동원(지원, 징병) 13~21만명

조선안 (계 387만명)

로무동원; 총독부알선 38만명

징 용 30만명

도내동원 319만명

합 계 491~503만명